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-171호

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24조, 「우편대체법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,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, 제1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0월 28일
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

제1조(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) ①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수수료
분실	2,000원
오손	2,000원
무여백	면 제

②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.

제2조(우편대체에 관한 수수료) ①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에 따른 우편대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구 분</td><td colspan="2">수수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납입</td><td>일반계좌</td><td colspan="2">면 제</td></tr>
<tr><td>특별계좌</td><td colspan="2">면 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이체</td><td>일반이체</td><td>면 제</td></tr>
<tr><td>자동이체</td><td>별도약정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수표추심</td><td colspan="2">면 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양도 및 승계</td><td colspan="2">면 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우편대체수표 용지</td><td colspan="2">면 제</td></tr>
</table>

제3조(기타 수수료) 제1조,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·보험홈페이지(http://www.epostbank.go.kr)에 게시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